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주요내용

01 설치개수 및 금지장소

- 각 정당이 행정동별 2개 이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설치 된 곳으로 부터 5m이내 설치금지

02 설치방법 제한

- 타 현수막, 신호등 안전표시, CCTV를 가리는 방법 금지
-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금지
-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가로등, 전봇대에 현수막 2개 이하 설치
-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 2.5m 이상,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 높이가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

03 설치규격 준수

- 정당명, 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표시기간(15일 이내)준수
- 현수막 면적 10㎡ 이내 - 글자크기는 5cm이상(세로)

※ 옥외광고물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5조의 2 참고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 금지광고물

범죄행위	미풍양속위해	청소년보호
사행심유발	인권침해	타법금지

대전시 친환경 현수막 전용게시대 운영

동구

연번	장 소
1	신흥동 신흥마을@102동 담장
2	가오동 가오고네거리
3	대동 충남중네거리 공원 앞
4	용전동 동부네거리

서구

연번	장 소
1	도마1동 도마네거리(서부교육청)
2	관저1동 건양대병원(원앙@)네거리
3	둔산2동 향촌@정문 옆
4	탄방동 공작네거리
5	둔산1동 크로바네거리
6	둔산3동 문정네거리
7	만년동 대덕대교네거리

대덕구

연번	장 소
1	중리동 중리네거리
2	송촌동 해피존앞네거리
3	법동 법동네거리
4	오정동 농수산오거리
5	신탄진동 대청대교 네거리

중구

연번	장 소
1	대사동 보문산공원오거리
2	목동 충남여고 담벽
3	대사동 충대병원네거리
4	대흥동 대고오거리(보문산방향)
5	태평동 버드내네거리
6	부사동 총무로네거리
7	산성동 버드내다리 네거리
8	문화동 센트럴파크@201동 앞
9	태평동 버드내마을@동문 옆
10	태평동 삼부스포렉스 옆

유성구

연번	장 소
1	노은동 노은네거리
2	노은동 노은4단지 공원 앞
3	반석동 반석마을@110동옆 담장
4	노은동 은구비네거리
5	궁동 충대후문 장대네거리
6	신성동 럭키하나@입구 횡단보도
7	관평동 테크노밸리 @613동 앞

※ 신청방법 : (사)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 / www.djsign.kr

[옥외광고물 허가 · 신고 문의]

동구 ☎251-4833

중구 ☎606-6792

서구 ☎288-3454

유성구 YUSEONG DISTRICT ☎611-2698

대덕구 ☎608-5183

2025년 대전광역시 옥외광고 모범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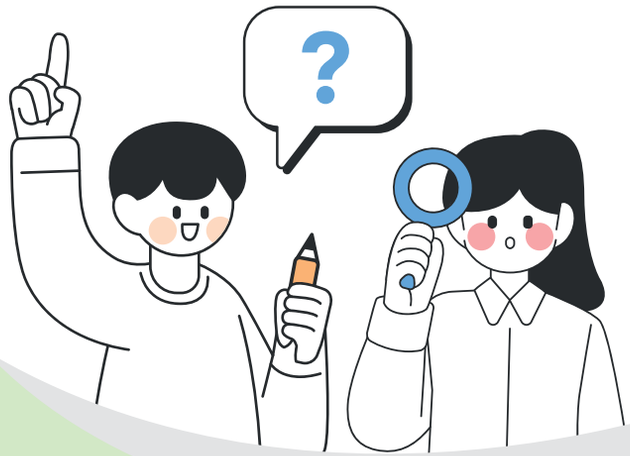
- 경성기획사 635-6080
- 서비스광고 585-1784
- 부광시공기획 624-5121
- 씨 원 933-5769
- 모든광고기획 010-2418-1482
- 인포인트 824-7031
- 웅진광고기획 583-1834
- 제이투광고기획 545-7600
- 엠케이싸인 825-8279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대전

옥외광고물

[간판·현수막 등]

바로알기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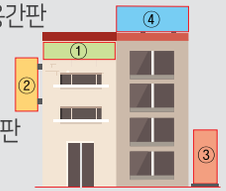
01 허가대상

-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벽면이용간판
-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벽면이용간판
- 돌출간판, 옥상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전기 이용 광고물
 (네온류 · 전광류 광고물, 디지털, 광고물, 디지털 홀로그램 등)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참고

02 신고대상

- 면적 5㎡ 이상인 벽면이용간판
- 건물의 4층 이상에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
-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이고, 면적이 1㎡ 미만인 돌출간판
-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 입간판, 현수막, 전단 등 유동 광고물



①벽면간판	허가	한변의 길이 10m이상. 4층이상 타사광고
	신고	면적5㎡ 이상, 4층 이상(허가대상 제외)
	허가·신고X	면적5㎡ 미만, 4층 미만(허가 · 신고대상 제외)
②돌출간판	허가	지면~윗부분 높이 5m 이상, 면적 1㎡이상
	신고	지면~윗부분 높이 5m 미만, 면적 1㎡미만
③지주간판	허가	지면~윗부분 높이 4m 이상
	신고	지면~윗부분 높이 4m 미만
④옥상간판	허가	모든 옥상 간판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참고

03 첨부서류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신청서 1부
- 토지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
- 표시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1부
- 광고물의 원색 도안 1부
- 광고물의 모양·규격·재료·디자인 설명서 및 설계도서 각 1부
- 위치도(약도) 및 현황도 1부

자연재해 대비 광고물 안전 점검

01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 허가 대상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02 안전점검 시기

- 최초로 표시한 경우 15일 이내
- 허가 · 신고 표시기간 연장 시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 변경(규격 · 자재 · 위치 등) 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참고

03 예방단계(평상시)

- 옥외광고물의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비실시
- 차량통행 및 보행자 안전에 방해가 되는지
- 광고물의 파손여부 및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 노후, 균열, 부식 등으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지
- 광고물 전용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와 정상작동 하는지

04 대비·대응단계(예비특보 · 태풍/폭설주의보 발효 시)

- 현수막, 입간판, 에어풍선 등 안전한 장소로 철거
-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광고주 자율정비
- 위험여부 지속적으로 확인
-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보행 및 차량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조치 후 소방서, 관할 구청에 신고

05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1) 가입대상?

벽보 전단 만을 취급하는 옥외광고 사업자 외에는 손해 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옥외광고대행 사업자 포함)

2) 책임보험 보상 한도액?

피해자 1명당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1억5천만원 이상, 상해 또는 재산피해는 3천만원 이상 (대인기준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

불법광고물 없는 대전 만들기

01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및 수거보상제 추진

- 시,구,옥외광고협회 등 시 진입로, 간선도로 등 정비
- 시민들이 직접 수거해온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보상금 지급

수거물 및 보상금 신청 (참여자) → 수거물 인수 및 확인 (동주민센터) → 보상금 지급신청 (동주민센터→구) → 보상금 지급 (구→참여자)

02 게릴라성 불법광고물 정비

- 월 1~2회 주말 일제정비로 게릴라성 주말 불법현수막 대응

03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 불법 유동광고물의 무분별한 살포에 따른 자동전화계도 단속

04 청정지역 불법현수막 금지

- 주요 교차로 (36개소)에 불법 현수막 근절로 깨끗한 경관 조성

동구	동부네거리, 가양네거리, 대전역네거리, 대동역오거리, 원동네거리, 삼성네거리, 성남네거리, 용전네거리
중구	서대전네거리, 부사오거리, 산성네거리, 태평오거리, 동부교육지원청네거리(센트럴유치원 앞), 대고오거리
서구	큰마을네거리, 용문역네거리, 도마네거리, 건양대병원네거리, 안골네거리, 월평역네거리
유성구	유성네거리, 충대정문오거리, 용반네거리, 구암역삼거리, 미래로네거리, 배울네거리
대덕구	중리네거리, 한남오거리, 오정네거리, 송촌네거리, 읍내네거리, 읍내삼거리, 석봉네거리, 신탄진네거리, 중리동하나로병원교차로, 송촌동행정복지센터교차로

05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생활불편 - 불법광고물 신고'